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예정)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및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사업자 등록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만재흡수선협약」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간 상이한 선체두께측정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그간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 신청 및 처리절차(안 제36조의2, 안 제56조의2 및 안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지위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근거서류를 갖추 지방청에 신고하게 하고, 지방청은 확인 후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컨테이너의 성능검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42조의5, 안 제57조의3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의 확인으로 결함이 식별된 경우 등 성능검사의 사유를 정하고, 성능 검사 결과 동일공정 생산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는 판매중지 및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게 함

다.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안 제46조, 안 제60조, 안 별표19, 안 별표29 개정)

거짓·부정한 형식승인인 경우만 취소의 사유로 하는 등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기준을 정비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 시험합격의 취소도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컨테이너형식 변경승인 및 갱신의 절차 및 기준마련(안 제56조, 안 제57조 개정, 안 제57조의2 신설, 안 별지 제45호의2서식, 안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신설된 컨테이너 형식승인 유효기간 5년 경과 시 지방청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갱신처리 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형식승인 변경신청 시 별도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함

마.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기준(안 제63조 개정, 안 제63조의2, 안 별표 29의2, 안 별표 29의3, 안 별지 제65호의2서식, 안 별지 제65호의3서식 신설)

기존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인력요건을 대신해 인력·시설·설비를 포함하는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취소 및 정지요건을 정함

바.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 절차(안 제65조, 안 별지 제66호 서식 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거짓·부정한 신청에 대한 취소절차를 마련함

사.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6조 개정)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후 10년이 도래한 경우 매년 실시하는 지도감독 시 지방청장이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 승인을 받은 자에 더해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청장이 안전점검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아. 컨테이너 안전조치의 방법과 기준 마련(안 제67조, 안 별지 제68호 서식 개정)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조치의 절차를 정비함

자. 협약 개정사항의 반영 및 선박 검사제도 운영 상 미비점의 개선(안
별표3, 안 별표 15의2 개정, 안 별지 제10호, 제12호서식, 제14호, 제14
호의2, 제21호, 제23호 및 제26호서식 개정)

「국제만재흡수선협약」 상 만재흡수선이 적용되는 남부동기 계절대
역 범위의 변경사항 및 「해상인명안전협약」 상 증서의 양식 변경(7
종)을 반영하고,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 간 상이한 선체두께측정 기준
을 동일하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및 제4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선박용물건 등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 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4. 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2조의5(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식별된 경우
3. 그 밖에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발생 등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종류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18조제1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품목별 판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및 제조단위번호(이하 ‘롯드번호’라고 한다)가 동일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롯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회수·교환(결함이 발생한 부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폐기하도록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6조에서 정한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또는 회수·교

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해당 롯드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형식승인”을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10항”으로, “제출하여

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 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4.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신청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이거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10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을 “제1항 후단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10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년 이내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대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2년 이내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의3(컨테이너의 성능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결함이 식별된 경우

3. 그 밖에 컨테이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발생 등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종류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컨테이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기준의 품목별 판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컨테이너 및 립트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립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는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컨테이너를 회수·교환(결함이 발생한 부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폐기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0조에서 정한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또는 회수·교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해당 릉드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 · 교환 · 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컨테이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7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8항”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은”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를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의3제4항”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취소”를 “취소”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7항”을 “법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63조의 제목 “(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은 별표 29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별지 제65의3호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법인인 경우

「민법」 제36조에 따른 법인의 주소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컨테이너 점검 설명서

가.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나. 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

다.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 절차 등)

라. 책임점검자의 임명

5.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5호의 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① 법 제24조

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을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신청서”를 “자 또는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마.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대한 지도·감독을”을 “대해”로, “하여야”를 “지도·감독을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후 10년이 도래(到來)하는 자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5조제5항”을 각각 “법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과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6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제63조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15의2, 별표 19 및 별표 2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9의2 및 별표 29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대역 또는 구역의 명칭	해 면	계절기간
1. 북대서양 동기계절 대역 I	그린란드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5도까지의 서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도까지의 북위 45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60도까지의 서경 1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그리니치자오선까지의 북위 60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북쪽으로 그리니치자오선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동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 북대서양 동기계절 대역 II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북위 36도 서경 73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서경 25도까지의 북위 36도의 위도선 및 거기부터 토리나나갑까지의 항정선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 I, 북대서양 동기계절구역 및 스카케라크해협의 스코를 통하는 위도선에 의하여 한정되는 발틱해를 제외한 해면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북대서양 동기계절 구역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캐나다 해안과 서경 61도의 자오선과의 교점 중 최남단까지의 항정선 및 캐나다와 미합중국의 동안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1. 선박길이 100미터를 넘는 선박 동기 12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기 2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 선박길이 100미터 이하의 선박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 북태평양 동 기 계 절 대역	러시아 동안에서 사할린의 서안까지의 북위 50도의 위도선, 거기에 쿠릴리온 최남단까지의 사할린의 서안, 거기에서 홋카이도 와카나이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홋카이도의 동안 및 남안, 거기에서 북위 35도까지의	동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경 14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 북위 3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알래스카 돌섬의 최남단까지의 항정선을 남쪽 한계로 하는 해면	
5. 남부동기 계절대역	미대륙 동안의 트레스 폰타스갑에서 남위 34도, 서경 50도의 점까지 항정선, 거기에서 동경 16도까지의 남위 3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36도, 동경 2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4도, 동경 3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남위 35도30분, 동경 118도의 점까지,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서안의 그림갑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안 및 동안을 따라 브루니도의 최남단까지, 스튜어트도의 블랙록포인트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47도, 동경 17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3도, 서경 170도의 점까지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위 33도의 위도선을 따라 남위 33도 서경 70도 점까지,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남위 41도 서경 75도 점까지, 거기에서 항정선을 따라 칠로에섬의 폰타 코로나 등대의 남위 41도 47분, 서경 73도 53분 지점까지, 거기에서 킬로에섬의 북쪽, 동쪽 및 남쪽 해안선을 따라 남위 43도 20분 서경 74도 20분 지점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서경 74도 20분 경도선을 따라 남위 45도 45분까지, 경도선 서경 74도 20분부터 동쪽으로 킬로에 수로의 내부지역을 포함한다.	동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6. 열대대역	가. 미대륙 동안으로부터 서경 60도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0도 서경 58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서경 20도까지의 북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30도까지의 서경 2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북위 30도의 위도선, 아프리카 동안으로부터 동경 70도까지의 북위 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3도까지의 동경 7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인도 서안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인도 남안을 돌아 인도 동안의 북위 10도30분까지, 거기에서	

	북위 9도 동경 82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북위 8도까지의 동경 82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서안까지의 북위 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0도의 베트남 동안까지의 아세아대륙의 동남 해안,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북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3도까지의 동경 145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미대륙 서안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을 북쪽 한계로 하고, 브라질 산토스항으로부터 서경 40도의 자오선과 남회귀선과의 교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남회귀선과 아프리카의 동안으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서안까지의 남위 2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동경 50도까지의 마다가스카르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 98도까지의 남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호주의 포트다윈까지 항정선, 거기에서 동쪽으로 웨셀갑까지의 호주 및 웨셀섬의 해안, 거기에서 요크갑의 서측까지의 남위 11도의 위도선, 요크갑의 동측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남위 11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26도 서경 75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2도47분, 서경 72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미주 서안까지의 남위 32도47분의 위도선을 남쪽 한계로 하는 해면 나. 포트 사이드부터 동경 45도의 자오선까지의 수에즈운하, 홍해 및 아덴만 다. 동경 59도의 자오선까지의 페르시아만 라. 호주 동안의 그레이트베리아리프까지의 남위 22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11도까지의 그레이트베리어리프에 따라 둘러 싸인 해면. 이 구역의 북방 한계는 열대대역의 남방 한계로 한다.	
7. 계절열대 구역	가.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대서양. 북은 유카탄의 카토체갑으로부터 쿠바의 산 안토니오갑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북위 20	열대 1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기 7월 16일부터

도까지의 쿠바의 북안 및 거기서 서경 20도까지의 북위 20도의 위도선 서는 미대륙의 해안 남 및 동은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10월 31일까지
나.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아라비아해 서는 아프리카의 해안, 아덴만의 동경 45도의 자오선, 남아라비아의 해안 및 오만만의 동경 59도의 자오선 북 및 동은 파키스탄 및 인도의 해안 남은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열대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이북의 벵갈만	열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기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라.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인도양 북 및 서는 열대대역의 남쪽한계 및 마다가스카르의 동안 남은 남위 20도의 위도선 동은 남위 20도 동경 50도의 점에서 남위 15도 동경 51도30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 51도30분의 자오선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인도양 북은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 동은 호주의 해안 남은 동경 51도30분에서 동경 114도까지의 남위 1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호주의 해안까지의 동경 114도의 자오선 서는 동경 51도30분의 자오선	열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지나해 서 및 북은 북위 10도부터 홍콩까지의 베트남 및 중국의 해안 동은 홍콩으로부터 수알항(루손섬)까지의 항정선과 북위 10도까지의 루손, 사마르 및 레이테 제도의 서안 남은 북위 10도의 위도선	열대 1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하기 5월 1일부터 1월20일까지
사.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태평양 북은 북위 25도의 위도선	열대 4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는 동경 160도의 자오선 남은 북위 13도의 위도선 동은 서경 130도의 자오선 아.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태평양 북 및 동은 미대륙의 서안 서는 미대륙 해안에서 북위 33도까지의 서 경 123도의 자오선 및 북위 33도 서경 123 도의 점에서 북위 13도 서경 105도의 점까 지의 항정선 남은 북위 13도의 위도선 자. 남위 11도 이남의 카펜테리아만 차.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태평양 북 및 동은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 남은 호주의 동안에서 동경 154도에 이르는 남위 2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회귀선까지 의 동경 154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남회귀선, 거기에서 남위 20도 까지의 서경 15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와의 교점까지의 남위 20도의 위도선 서는 열대대역에 포함된 그레이트배리어리 프 내측의 구역의 한계선 및 호주의 동안	하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8. 선박길이 가 100미 터 이하인 선박에 적 용되는 동 기 계 절 구 역	가. 다음의 선에 의하여 둘러 싸인 해면 북 및 서는 미합중국의 동안 동은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 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북 위 36도 서경 73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남은 북위 36도의 위도선 나. 스카게락 해협을 스카우를 통하는 위도선에 따라 둘러싸인 발틱해 다. 북위 44도 이북의 흑해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라.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지중해 북 및 서는 프랑스 및 스페인의 해안 및 스페인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동경 3도의 자오선 남은 동경 3도에서 사르디니아 서안까지의 북위 40도의 위도선 동은 북위 40도부터 동경 9도까지의 사르디니아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코르시카 남안까지의 동경 9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 9도까지의 코르시카의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사시에갑까지의 항정선 마. 북위 50도의 위도선과 한국 동안의 북위 38도의 점으로부터 홋카이도 서안의 북위 43도 12분의 점까지의 항정선에 따라 둘러싸인 동해	하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기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기 3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하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 하기대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해면(선박 길이가 100미터를 넘는 선박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해면은 제외한다)이 아닌 해면	
비 고 : 1. 서틀랜드 제도는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I 과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II와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호치민, 아덴 및 버베라는 열대대역과 계절열대구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발파라이소 및 산토스는 열대대역과 하기대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홍콩 및 수알은 계절열대구역과 하기대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대역 또는 구역의 한계선상에 있는 항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선박이 해당 항을 도착할 때까지 항해한 대역이나 구역 또는 해당 항을 출항한 후 항해하려는 대역 또는 구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제31조의2제1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양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양부 0.4L 간의 3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관, 선박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선박검사관이 두께를 측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 3) 쇄모한도
- 4) 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선박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 5) 두께측정업체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해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선박의 규모,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양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양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유조선산적화물선 또는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에 대해서는 화물구역에 있는 평형수흡수선과 만재흡수선 사이의 모든 선측 외판에 대하여 나목에 따른 측정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라. 두께측정업체가 실시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두께측정의 전 과정에 대하여 통제 및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전 측정과정의 100분의 3 이상(중강도 부재 100분의 2 이상, 기타 부재 100분의 1 이상)을 입회해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3. 쇄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쇄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쇄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재명칭	쇄모한도
1.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중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2. 이중저능판, 거더, 큰 골재의 웨브 및 면재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3. 작은 골재의 웨브면재 및 브래킷, 수밀격벽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4. 창내능골의 웨브 및 브래킷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비고 1.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않는 골재부재를 말한다. 2.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쇄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쇄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쇄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나. 측정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검사관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제46조제1항 관련)

1. 형식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효력정지 6개월
2의2. 형식승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	효력정지 2개월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효력정지 6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호	효력정지 2개월

2.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1호	지정취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2호	지정취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3호	지정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5호	효력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6호	효력정지 2개월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	효력정지 6개월
3. 컨테이너형식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	효력정지 2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5호	효력정지 6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	효력정지 2개월

2.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지정취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	지정취소
3.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	지정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	효력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3제2항제6호	효력정지 2개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기준(제63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을 갖추는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선·항해·기계·기관·용접·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컨테이너의 제조, 검사, 시험 또는 수리 등의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의 관련학과 외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공업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제1호의 점검인력자격을 갖춘 사람 중 안전점검 업무를 책임관리하고 점검기록을 작성·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점검자 1명을 지정·임명할 것
3.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컨테이너수리업자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자본금 및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위탁 또는 임대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거나 들어올릴 수 있는 장비
 - 나. 요철 또는 부식부위가 구조적 강도에 미치는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장비
 - 다. 골재 또는 판재의 구부러짐·변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 라. 판두께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5.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책임점검자 및 안전점검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연간 총 12시간의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
 - 가. 컨테이너 안전점검 책임의식 및 관련 국제협약·법령의 규정
 - 나. 컨테이너의 규격·종류별 특성 및 안전점검방법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취소와 정지 처분의 기준(제63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1호	사업등록 취소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	사업정지 6개월
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3호	사업정지 2개월
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4호	사업정지 2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5호	사업정지 6개월
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	사업등록 취소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여 객 선 안 전 증 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여객선안전설비기록부(양식 P)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Passenger Ship Safety(Form P).

국 제* 항해에 대한 것
단국제*

for $\frac{an^*}{a \text{ short}^*}$ international voyag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제IV장 제2규 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 번호*** IMO Number***

건조일 :

Date of build:

-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의 건조 단계에 달한 날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 인도일

Date of delivery

-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where applicable)

적용 가능한 모든 일자를 기재할 것.

All applicable dates shall be complet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 I 장 제7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7 of the Convention.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A3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인증된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1 구조, 주기관, 보조기관, 보일러 및 그 밖의 압력용기: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 .2 수밀구획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 .3 다음의 구획만재흘수선:
the following subdivision load lines:

선측의 중앙부에 지정되고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제II-1장 제18규칙 ***) Sub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regulation II-1/18 ****)	건 현 Freeboard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의 장소가 여객을 적재하는 장소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할 것.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s
P. 1	_____	_____
P. 2	_____	_____
P. 3	_____	_____

- 2.2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의 제 II-1장 G편 요건을 갖추*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as fuel* /N.A.*

- 2.3 방화구조, 화재안전장치 및 설비와 화재제어도는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 2.4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조정의 의장품을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5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구명줄 발사기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6 무선설비가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2.7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요건과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8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 장치 및 항해용 간행물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 2.9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 2.10 그 밖의 모든 관점에서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009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획부호 "C.1, C.2 및 C.3"이 사용되어야 함.

For ships constructed before 1 January 2009, the applicable subdivision notation "C.1, C.2 and C.3" should be used.

2.11 이 선박은 협약 제Ⅱ-1장 제55규칙*/제Ⅱ-2장 제17규칙*/Ⅲ장 제38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1/55*/II-2/17*/III/38* of the Convention;

2.12 기관 및 전기설비*/방화설비*/구명설비*에 대한 대체설계 및 배치의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fire protection*/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I장 제14규칙 (d)항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 _____

날 짜

Date : _____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
 예기간 동안에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의 규칙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 _____

날 짜

Date :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여객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P)
RECORD OF EQUIPMENT FOR THE PASSENGER SHIP SAFETY (FORM P)

이 기록부는 여객선 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_____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여 객 정 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3.1 탐조등을 갖춘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5)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5)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2.3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reg III/43*)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43*)			4.2 고속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fast rescue boats		
			5. 구명뗏목 Liferafts		
2.4 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6)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2.5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5.1 구명정의 수 Number					
2.5.2 종류 Type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 자체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으로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6. 강하식 탑승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s(MES)		9.2 어린이용 Number of child lifejackets	
6.1 강하식 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 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served by them		9.3 유아용 Number of infant lifejackets	
6.2 강하식 탑승장치에 의하여 탑승 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served by them		10. 방수복 Immersion suits	
7. 구명부기 Buoyant apparatus		10.1 총수량 Total number	
7.1 구명부기의 수 Number of apparatus		10.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 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7.2 구명부기를 사용하는 전체 인원 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11.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8. 구명부환의 수 Number of lifebuoys			
9.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12. 보온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9.1 성인용 Number of adult lifejackets		13. 구명설비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 LSA Code 4.1.5.1.24, 4.4.8.31 및 5.1.2.2.1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은 제외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 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2. 선박-육상 간 조난 경보 전송을 착수시키는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1.1.1 DSC(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선택호출) 인코더 DSC encoder		3. 해상안전정보(MSI), 수색 및 구조 관련 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4. EPIRB EPIRB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5. 양방향 VHF 무선통신장치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5.1 휴대식 Two-way VHF 무선통신장치 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5.2 구조정에 비치된 양방향 VHF 무선통신장치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6.2 구조정에 비치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in survival craft (radar SART)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6.3 구조정에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stowed for rapid placement survival craft (AIS-SART)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4 구조정에 비치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stowed survival craft (AIS-SART)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S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4.3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 파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2 예비의 자기 컴 파스* Spare magnetic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3 자이로 컴 파스* Gyro compass*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4 자이로 컴 파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5 자이로 컴 파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through the water)*	
1.7 방위환 또는 컴 파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2 9 GHz 항해용 레이더* 9 GHz rada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3.3 제2항해용레이더(3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15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화 물 선 안 전 무 선 증 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화물선 안전무선설비기록부(양식 R)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Cargo Ship Safety Radio(Form R).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제IV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번호 IMO Number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_____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_____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이 선박은 협약의 제 I 장 제9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규정 및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협약의 제 I 장 제9규칙에 따라 연차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subject to the 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2 면)

_____년_____월_____일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검 사 의 획 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 I 장 제9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Date: _____

연 차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 (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서
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화물선안전무선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R)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FORM R)

이 기록부는 화물선 안전무선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항 목(Item)	실제조치(Actual provision)
2. 제2차 경보장치(Secondary means of alerting)	
3. 해상안전정보, 수색 및 구조 관련 정보 수신을 위한 설비(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4. 위성 EPIRB	
5.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5.1 휴대용 양방향 VHF 무선전화장치(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5.2 생존선에 장착된 양방향 VHF 무선 전화 장치(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6.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	
6.1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보관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6.2 생존정에 보관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6.3 생존정에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보관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6.2 생존정에 보관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AIS-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3.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 IV/15.6 AND 15.7)

3.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VHF, MF, MF/HF, Inmarsat SES) _____

3.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3.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이것은 이 기록부가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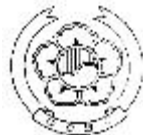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증서번호 제 호
Cert.no. _____



화 물 선 안 전 설 비 증 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화물선안전설비기록부(양식 E)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Cargo Ship Safety(Form 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재화중량톤수(미터톤)* Deadweight(metric tons)*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길이(제Ⅲ장 제3규칙 12항): _____

Length of Ship(regulation III/3.12): _____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Oil tanker

케미칼 탱커

Chemical tanker

가스캐리어

Gas carrier

그 밖에 위의 이외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
작업의 시작일: _____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Ⅰ장 제8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8 of the
Convention.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가스캐리어에만 적용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2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3 구명줄 발사기를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4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2.5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6 그 밖에 모든 면에서 이 선박은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7 이 선박은 협약 제 II-2장 제17규칙*/제 III장 제38규칙*에 따른 대체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 */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2/17*/III/38* of the Convention;

2.8 방화*/구명*설비에 대한 대체설계 및 배치의 승인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fire protection*/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3. 이 선박은 협약 제 III장 제26.1.1.1규칙**에 따라 항해구역을_____로 제한하여 운항하고 있음

That the ship operate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II/26.1.1.1** within the limits of the trade area _____.

4.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자체 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으로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이 증서는 협약의 제 I 장 제8규칙에 따라 연차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 subject to the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8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 협약 I/14(a)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만료 날짜를 삽입한다. 이 날짜의 날짜와 월은 규정 I/14(h)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 한 협약의 규정 I/2(n)에 정의된 날짜에 해당한다.

Insert the date of expiry a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a) of the Convention. The day and the month of this date correspond to the anniversary date as defined in regulation I/2(n) of the Convention, unless amend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 I 장 제8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I /8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서 _____까지 유효한 것
 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E)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FORM E)

이 기록부는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_____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대빗 진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davit launched lifeboats			3.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free-fall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43규칙*)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43*)			3.2 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7)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7)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3.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2.4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3.4 내화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2.5 내화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4. 모터 구명정의 수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4.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6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2.6.1 구명정의 수 Number			5.1 위의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6.2 종류 Type					

*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뗏목 Liferafts			6.3 제3장 제31규칙 1.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6.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7. 구명부환의 수 Number of lifebuoys	
6.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6.1.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 방수복 Immersion suits	
6.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9.1 총수량 Total number	
6.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9.2 구명조끼의 요건에 적합한 방수 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6.2.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 조 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 조 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 파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1.2 예비의 자기 컴 파스* Spare magnetic compass*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 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 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1.3 자이로 컴 파스* Gyro compass*		3.2 9GHz 항해용 레이더* 9GHz radar*	
1.4 자이로 컴 파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3.3 제2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 Second radar(3 GHz/9 GHz**)*	
1.5 자이로 컴 파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1.7 방위환 또는 컴 파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ECDIS)**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계속)

DETAIL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Continued)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8.2 회두각 속도계* Rate-of-turn indicator*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 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15 선교 항해당직경보장치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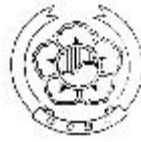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삭제할 것
Delete as appropriate.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화 물 선 안 전 증 서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화물선 안전설비기록부(양식 C)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for Cargo Ship Safety (Form C).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박의 재화중량톤수 Deadweight of ship (metric tons)*	IMO번호 IMO Number**

선박의 길이(제Ⅲ장 제3규칙 12항)

Length of Ship(regulation III/3.12):

선박의 운항구역(제Ⅳ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Oil tanker

케미칼 탱커
Chemical tanker

가스캐리어
Gas carrier

그 밖에 위의 이외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건조일 :

Date of build:

- 건조 계약일
Date of building contract
 - 용골이 거치되거나 또는 그와 동등의 건조 단계에 달한 날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 인도일
Date of delivery
 -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where applicable)
- 적용 가능한 모든 일자를 기재할 것.
All applicable dates shall be completed.

이 증서는 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1장 제8규칙, 제9규칙 및 제10규칙의 요건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8, I/9, I/10 of the Convention.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가스캐리어에만 적용할 것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IMO에서 Res.A1117(30)으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른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 A3 해역에서의 운항이 인증된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위성 서비스를 괄호 안에로 표시할 것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 2.1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조, 기관 및 설비의 상태가 만족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협약의 제 II-1장 및 제 II-2장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the condition of the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as defined in the regulation I/10 was satisfactory and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 II-1 and chapter II-2 of the Convention(other than those relating to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control plans.);
- 2.2 이 선박은 _____을(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협약 제 II-1장 G편의 요건을 갖추*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 as fuel* /N.A.*;
- 2.3 선저외판에 대한 최근 2회의 검사는 _____ 및 _____에 실시되었음;
the last two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took place on _____ and _____;
- 2.4 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control plans;
- 2.5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6 구명줄발사기를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7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2.8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규정과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9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2.10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 2.11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이 선박은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 2.12 이 선박은 협약의 제 II-1장 제55규칙* / 제 II-2장 제17규칙* / 제 III장 제38규칙*에 따라 대체 설계 및 배치가 적용되었음*/적용되지 않았음*;
the ship was*/was not* subjected to an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in pursuance of regulation(s) II-1/55* / II-2/17* / III/38* of the Convention;
- 2.13 기관 및 전기설비*/방화*/구명*설비에 관한 대체설계 및 배치승인에 관한 서류가 이 증서에 첨부되었음*/첨부되지 않았음*
a Documents of approval of alternative design and arrangements for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fire protection*/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is*/is not*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3면)

3. 이 선박은 협약 제Ⅲ장 제26.1.1.1규칙*에 따라 항해구역을 _____로 제한하여 운항하고 있음
That the ship operate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II/26.1.1.1* within the limits of the trade area _____.

4.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이 협약의 제1장 제8규칙, 제9규칙 및 제10규칙에 따라 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선저외판의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subject to the annual, intermediate and periodical surveys and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8, I/9 and I/10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_____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 자체복원식 부분폐형구명정을 설치한 선박으로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이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a)항에 따라 주관청이 정한 바에 따라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만료일은 이 협약 제1장 제14(h)규칙에 따라 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약 제1장 제2규칙 (n)항에 정의된 연차일을 말합니다.

Insert the dated of expiry a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a) of the Convention. The day and month of this date correspond to the anniversary date as defined in regulation I/2(n) of the Convention, unless amend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이 증서의 2.1에 명확하게 적힌 구조, 기관 및 설비에 관한 연차 및 중간검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relating to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referred to in paragraphs 2.1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 따른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 및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
 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0 and
 I/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선저외판의 검사에 대한 확인*

Endorsement for Inspection of the outside of ship's bottom*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10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inspection required by regulation 1 /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제1차 검사

First inspec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2차 검사

Second inspec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구명설비 및 이 증서의 2.3, 2.4, 2.5, 2.8 및 2.9에 명확하게 적힌 다른 설비에 관한 연차 및 중간검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relation to life-saving appliance and other equipment referred to in paragraphs 2.3, 2.4, 2.5, 2.8 and 2.9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8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1 /8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중간**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중간**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연차검사

Annu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Provision may be made for additional inspections.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 /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8규칙 및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 /8 and I /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이 증서의 2.6 및 2.7항에 명확하게 적힌 무선설비에 관한 중간검사의 확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relation to radio install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s 2.6 and 2.7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9규칙에 따른 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I /9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중간검사
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중간검사
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중간검사
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중간검사
Periodical Survey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규칙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중간검사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 /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1장 제9규칙 및 제1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I /9 and I /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7면)

제1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1/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1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1/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
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1/14(e) or 1/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e)항*/(f)*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e)*/1/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1/14(h) applies

협약의 제1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협약의 제1장 제1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것
Delete as appropriate.

화물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C)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FORM C)

이 기록부는 화물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개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_____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데이트 진수식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davit launched lifeboats			3.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free fall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reg III/43*)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43*)			3.2 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 칙 및 LSA Code 4.7)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7)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3.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 부착형 구명 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3.4 내화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 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2.4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4. 모터 구명정의 수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5 내화 구명정의 수 (제3장 제 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4.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5.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2.6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1 위 2 및 3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6.1 구명정의 수 Number					
2.6.2 종류 Type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뗏목 Liferafts			6.3 제III장 제31규칙 1.4항에 의하 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6.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7. 구명부환의 수 Number of lifebuoys	
6.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 jackets	
6.1.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 방수복 Immersion suits	
6.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9.1 총수량 Total number	
6.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9.2 구명조끼의 요건에 적합한 방 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6.2.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2. 선박-해안 조난 경보 전송하는 제2차 수단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3. 해상안전정보 및 수색구조 관련 정보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4. EPIRB EPIRB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5. 양방향 VHF 무선전화 장치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5.1 휴대용 양방향 VHF 무선전화 장치 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5.2 생존정에 장착된 양방향 VHF 무선전화 장치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6.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1 생존정에 신속한 배치를 위해 적재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2 생존정에 적재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radar 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6.3 생존정에 신속한 배치를 위해 적재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6.4 생존정에 적재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 (AIS-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4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Regulation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 파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2 예비의 자기컴파스** Spare magnetic compass**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3 자이로 컴 파스** Gyro compass**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4 자이로 컴 파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5 자이로 컴 파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1.6 선수 또는 항적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7 방위환 또는 컴 파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8 선수방위 수정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2.2 전자해도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법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2 9 GHz 레이더** 9 GHz rada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3.3 제2 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15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 system (BNWA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1983 SOLAS 개정안(MSC.6(48))을 참조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 제5장 제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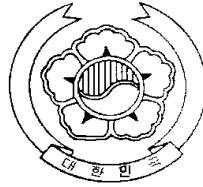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직인

증서번호 제
Cert. No.

호



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국제고속선 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36(6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Resolution MSC. 36(63)]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craft	제조사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 and hull number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

설계수선에서의 선수 및 선미 의 흘수
Design waterline corresponding to draughts at draught marks of (m) forward, (m) aft

분 류 A 류 여객선 / B 류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박의 형식 공기부양선 / 표면효과선 / 수중익선 / 단동선체 / 다동선체 / 기타(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cushion vehicle/surface effect ship/hydrofoil/monohull/multihull/
other(give detail)*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주요개조작업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craft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on which a major conversion was comm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이 선박은 「국제고속선안전코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검사되었음
That the above-mentioned craft has been duly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 이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무선설비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도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radio station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craf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및 다음의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인원 이하임

That the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for a total number of _____ persons and no more as follows: _____

4. 이 선박은 이 코드의 1.11항 규정에 따라 다음의 동등물을 인정하였음:

That, in accordance with 1.11 of the Code, the following equivalents have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craft:

해당절

동등한 장비

Paragraph _____ Equivalent Arrangement _____

이 증서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이 코드의 1.5항에 따른 검사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 of the Code, this craft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8.8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8.8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8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8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8.9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8.9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9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9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8.10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where 1.8.10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8.10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10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8.13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advancement of the anniversary date
where 1.8.13 of the Code applies

규칙 제1.8.13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8.13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규칙 제1.8.13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8.13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이 기록부는 고속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craft

선 명
Name of craft: _____

제조사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IMO 번호
IMO Number: _____

분 류: 분류 A 여객선 / 분류 B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 형 : 공기부양선, 표면효과선, 수중익선, 단동선체, 다동선체, 기타(상세히 적을 것)
Craft type: air cushion, surface effect ship, hydrofoil, monohull, multihull,
other(give details _____)

여객정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2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_____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_____
2.2 SOLAS 규정 III/42에 적합한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OLAS regulation III/42	_____
2.3 SOLAS 규정 III/44에 적합한 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OLAS regulation III/44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수량 Number	
2.4.2 종류 Type	
3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3.1 위의 총 구명정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4 SOLAS 규정 III/38에서 40에 만족하는 적절한 진수장치가 있는 구명뗏목 Liferafts complying with SOLAS regulations III/38 to 40 for which suitable means of launching are provided	
4.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4.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5 구명뗏목(이 코드의 Annex 10) Open reversible liferafts(Annex 10 of the Code)	
5.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6 해상탈출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MES)	
6.1 제공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served by them	
7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1 성인용의 수 Number suitable for adults	
8.2 어린이용 수 Number suitable for children	
9 방수복 Immersion suits	
9.1 총개수 Total number	
9.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10.1 총개수 Total number	
10.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3. 해상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4. EPIRB EPIRB	_____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5.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_____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6. Radar SART or AIS-SART Radar SART or AIS-SART	_____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7. 2,182 kHz 무선전화 조난주파수 청수 수신기 Radiotelephone distress frequency watch receiver on 2,182 kHz*	_____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_____	8. 2,182kHz 무선전화 경보신호 발생장치 Device for generating the radio- telephone alarm signal on 2,182 kHz**	_____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_____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_____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_____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_____		_____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_____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_____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_____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 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_____		_____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_____		_____

4. 무선설비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이 코드 14.14.6, 14.14.7 및 14.14.8절)
(paragraphs 14.14.6, 14.14.7 and 14.14.8 of the Code)

-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 해상안전위원회에서 날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 항목은 1999년 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증서의 첨부되는 기록
부에 다시 기재할 필요 없음

Unless another date is determined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this item need not be reproduced on the
record attached to certificates issued after 1 February 1999.

** 이 항목은 1999년 2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증서의 첨부된 기록부에 다시 기재할 필요 없음

This item need not be reproduced on the record attached to certificates issued after 1 February 1999.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1.1 자기컴퍼스 Magnetic compass	
1.2 자이로컴퍼스 Gyro-compass	
2. 선속거리계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3. 음향측심기 Echo-sounding device	
4.1 9 GHz 레이더 9 GHz radar	
4.2 제2 레이더(3GHz/9GHz*) Second radar(3 GHz/ 9 GHz *)	
4.3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자동추적장치(AT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Automatic tracking aid(ATA)	
5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그 밖의 위치고정장치*를 위한 수신기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navigation system/Other means of position fixing *, **	
6.1 회두각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6.2 타각 지시기/조타 스러스트 방향 지시기* Rudder angle indicator/Direction of steering thrust indicator*	
7.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 Nautical chart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7.2 ECDIS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CDIS	
7.3 항해용 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7.4 전자항해용 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nautical publications	
8. 탐조등 Search light	
9.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10. 야시경 Night vision equipment	
11. 추진장치의 모드 표시수단 Means to show the mode of the propulsion systems	
12. 자동조타장치(자동 조타) Automatic steering aid(Automatic pilot)	
13.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4.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5.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VDR)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77 -

이 기록부는 모든 사항이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_____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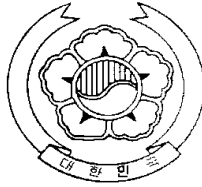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97(7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Resolution MSC. 97(73))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craft	제조사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 and hull number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

길이방향의 부면심(浮面心, 트림이 생기기 전의 수면선과 트림이 생긴 후의 수면선이 교차하는 점)의 기준선에서
하방으로 _____ m에 해당하는 설계수선에서 선수흘수 _____ (m) 및 선미흘수 _____ (m)
Design waterline corresponding to a height of _____ below the reference line at the longitudinal centre of
flotation, and draughts at draught marks of _____(m) forward, _____(m) aft

기준선의 상단은 길이 방향의 부면심(浮面心)에서 (최상층 갑판으로부터 하방으로 _____mm)* (용골
하면으로부터 상방으로 _____mm)*에 (표시)* (규정)* 되어 있다.
The upper edge of the reference line is (marked)* (defined)* at (_____ mm below uppermost deck at side)*
(_____ mm above the underside of keel)* at longitudinal centre of flotation.

분 류: A 류 여객선 / B 류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박의 형식 공기부양선 / 표면효과선 / 수중익선 / 단동선체 / 다동선체 / 기타(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cushion vehicle/surface effect ship/hydrofoil/monohull/multihull/
other(give details _____)*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같은 건조단계일, 또는 주요 개조작업 시작일: _____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craft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on which a major conversion
was commenced: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삭제할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증서는 다음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2000국제고속선안전코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검사되었음
That the above-mentioned craft has been duly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2. 이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무선설비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도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radio station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craf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수 및 다음의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인원수 이하임
That the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for a total number of _____ persons and no more as follows : _____
4. 이 선박은 이 코드의 1.11항에 따라 다음의 동등물을 인정하였음:
That, in accordance with 1.11 of the Code, the following equivalents have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craft:
해당절 _____ 동등한 장비
Paragraph _____ Equivalent Arrangement _____

이 증서는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 day of _____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이 코드의 1.5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 of the Code, this craft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제1.8.8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8.8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8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8.8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검사 완료 후 제1.8.9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8.9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9항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8.9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8.10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where 1.8.10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8.10항에 따라서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8.10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8.12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advancement of the anniversary date
where 1.8.12 of the Code applies

규칙 제1.8.12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이다.

In accordance with 1.8.12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규칙 제1.8.12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 이다.

In accordance with 1.8.12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이 기록부는 고속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craft

선 명

Name of craft: _____

제조사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IMO 번호

IMO Number: _____

분 류: 분류 A 여객선 / 분류 B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 형: 공기부양선, 표면효과선, 수중익선, 단동선체, 다동선체, 기타(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 cushion vehicle, surface effect ship, hydrofoil, monohull, multihull,
other (give details _____)

여객정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_____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
2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_____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_____
2.2	국제구명설비코드 4.5에 적합한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ection 4.5 of the LSA Code	_____
2.3	국제구명설비코드 4.6 및 4.7에 적합한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ection 4.6 and 4.7 of the LSA Cod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수량 Number	
2.4.2 종류 Type	
3.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3.1 위의 총 구명정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4. 국제구명설비 코드 4.1 및 4.3에 만족하는 적절한 진수장치가 있는 구명뗏목 Liferafts complying with sections 4.1 to 4.3 of the LSA Code for which suitable means of launching are provided	
4.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4.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5. 구명뗏목 (이 코드의 Annex 11) Open reversible liferafts (Annex 11 of the Code)	
5.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6. 해상탈출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 (MES)	
6.1 제공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served by them	
7.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1 성인용의 수 Number suitable for adults	
8.2 어린이용 수 Number suitable for children	
9. 방수복 Immersion suits	
9.1 총 개수 Total number	
9.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10.1 총 개수 Total number	
10.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1.1	자기 컴퍼스 Magnetic compass	
1.2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1.2	자이로 컴퍼스 Gyro-compass	
2.	선속거리계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3.	음향측심기 Echo-sounding device	
4.1	9 GHz 레이더 9 GHz radar	
4.2	제2 레이더(3GHz/9GHz*) Second radar (3 GHz/ 9 GHz *)	
4.3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자동추적장치(AT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Automatic tracking aid(ATA)	
5.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기타 위치고정장치*를 위한 수신기 Receiver for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navigation system/Other means of position fixing *, **	
6.1	회두각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6.2	타각 지시기/조타 스러스트 방향 지시기* Rudder angle indicator/Direction of steering thrust indicator*	
7.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 Nautical chart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7.2	ECDIS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CDIS	
7.3	항해용 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7.4	전자항해용 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nautical publications	
8	탐조등 Search light	
9.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10.	야시경 Night vision equipment	
11	추진장치의 모드 표시수단 Means to show the mode of the propulsion systems	
12.	자동조타장치(자동 조타) Automatic steering aid (Automatic pilot)	
13	레이더 반사기/ 다른 수단 *, ** Radar reflector/ Other means *, **	
14.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15.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16.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7.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 (VDR)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4.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 n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 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_____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		3. 해상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_____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4. EPIRB EPIRB	_____
1.1.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5.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_____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6. Radar SART or AIS SART Radar SART or AIS SART	_____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	_____	7. 양방향 현장 무선통신기 121.5MHz 및 123.1MHz Two-way on-scene radiocommunications 121.5 MHz & 123.1 MHz	_____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1.2.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	_____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_____		
1.3.2 DSC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_____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_____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국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_____		

5.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이 코드 14.15.6, 14.15.7 및 14.15.8절)
(paragraphs 14.15.6, 14.15.7 and 14.15.8 of the Code)

5.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5.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5.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이 기록부는 모든 사항이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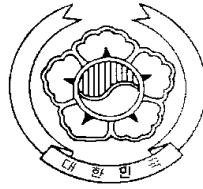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증서번호 제 _____ 호
 Cert. No. _____



특수목적선안전증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SPS)를 첨부해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Form SPS).

이 증서는 결의서 MSC.266(84)에 의해 채택된 2008 특수목적선안전코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되었습니다.

Issued in compliance with provisions of the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2008, as adopted by resolution MSC.266(84)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특수용도

Ship's special purpose _____

운항 허용 해역(SOLAS 제4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s is certificated to operate(SOLAS regulation IV/2)**

용골 거치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_____.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코드 제1.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1.6 of the Code.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이 선박은 아래와 같이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1 구조, 주기관 및 보조기관, 보일러 및 기타 압력용기들;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2 수밀수직구역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2.2 이 선박은 방화구조, 화재안전 장치 및 설비, 화재제어도에 관한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 총회 결의서 A.1117(30)에 의해 기구가 채택한 IMO 선박식별번호 체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 A3 해역 내에서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For a ship certified to operate in sea area A3, indicate the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in brackets.

- 2.3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코드의 규정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4 구명줄 발사기와 구명설비용 무선설비가 코드의 규정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installation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5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한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2.6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공급과 기능이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provision and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2.7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한 코드의 규정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2.8 이 코드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규정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이 비치되어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 2.9 그 밖의 모든 점에서 이 선박은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 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 has not* been issued.

4. 이 선박은 SOLAS 협약(개정 포함)에 따라 발행된 증서를 소지하고/ 소지하지 않고* 있음.
That the ship has/has not* been provided with Certificates issued under SOLAS, as amended.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day of_____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on the _____day of _____ .

해양수산부장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급법인명(한글 및 영문)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본 증서 제2.1항에 해당하는 선체, 기관 및 설비의 연차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RELATING TO HULL, MACHINERY
AND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1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본 증서 2.2, 2.3, 2.4, 2.6, 2.8 및 2.9항에 해당하는 구명 및
그 밖의 설비의 연차 및 중간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LIFE-SAVING APPLIANCES AND OTHER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2, 2.3, 2.4, 2.6, 2.7, 2.8 AND 2.9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본 증서 2.5항에 해당하는 무선설비의 정기적 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RADIO
 INSTALL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2.5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extension of the certificate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본 증서는 코드 제1.7.3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7.3,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특수목적선 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SPS)
Record of Equipment for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Form SPS)

이 기록부는 특수목적선 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1. 선박의 개요
Particular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특수용도 승선자 수(여객 포함)
Number of special personnel on board(including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_____

무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최소 승선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on board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oar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코드, 4.5절)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5)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코드, 4.6절)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구명정의 수 Number		
2.4.2 형식 Type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5. 구명뗏목 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6. 구명부환의 수 Number of lifebuoys	
7.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 방수복 Immersion suits	
8.1 총 수량 Total number	
8.2 구명조끼 요건에 맞는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9.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 LSA코드 제4.1.5.1.24항, 제4.4.8.31항 및 제5.1.2.2.13항에서 요구되는 것은 제외함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3 해사안전정보 및 수색·구조 관련 정보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SI and search and rescue related information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4 EPIRB EPIRB	
1.1.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5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5.1 휴대식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비 Portable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5.2 생존정 고정식 쌍방향 VHF 무선전화 장비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itted in survival craft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6 선박의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hip's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	
1.2.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6.1 생존정에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2.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6.2 생존정에 보관된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SART) stowed for in survival craft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3 생존정에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stowed for rapid placement in survival craft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6.4 생존정에 보관된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stowed in survival craft	
1.3.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인코더 DSC encoder			
1.3.2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2 선박 대 육상 조난경보의 송신 을 개시하는 2차 수단 Secondary means of initiating the transmission of ship-to-shore distress alerts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SOLAS 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SOLAS regulation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 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4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s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1.9 선수방위 전달장치*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6.3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2.1 항해용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ECDIS)**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7.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2.2 ECDIS의 백업장치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7.2 선회율 지시기* Rate of turn indicator*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8.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s		9.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 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 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 navigation receiver		10.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2 9GHz 항해용 레이더* 9GHz radar*		11.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3 제2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2.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		13.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설비는 허용됨. 그 밖의 설비의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10면)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_____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컨테이너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권리·의무 승계일 (합병일)		
권리·의무 승계 (합병)의 사유		
승계 후 형식승인서 변경 기재사항		

[] 「선박안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선박안전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컨테이너형식승인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형식승인증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형식승인서 발급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명 (대표자명)	국문	상호 (법인명)	국문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국문					
영문							
제 조 자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으십시오)	상호 (법인명)	국문					
		영문					
	주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품명	컨테이너		형식			
	규격			종류			
	형식						
최초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발행일자							

[] 「선박안전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선박안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
신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서류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품목당 3,000원
------	---	--------------------------

유의사항

□ 선박용품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품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품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 5.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 5. 제조한 컨테이너가 「선박안전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6.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리절차



제 호					
컨테이너검정증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ARTICLES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표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컨테이너의 내용(PARTICULAR OF ARTICLES)					
⑤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규격 Size	⑦형 식 Type	⑧수 량 Quantity	⑨제 조 번 호 Manufacturer. Serial No.	⑩제 조 일 자 Date of Manufacturer.
⑪비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7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9.2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CSC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 국 해 양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CSC SAFETY APPROVAL

컨테이너안전승인판

[1] / [2]

검사
증인

DATE MANUFACTURED

IDENTIFICATION No.

MAXIMUM OPERATING GROSS MASS kg lbs

ALLOWABLE STACKING LOAD FOR 1.8g kg lbs

TRANSVERSE RACKING TEST FORCE newtons

가로: 200mm 이상, 세로: 100mm 이상

비고:

1. 1행: [1]은 승인국으로서 국제도로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등록국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식별부호로 표시하며, [2]는 승인 식별 번호를 표시한다(예:ROK/KR-001/13).
2. 2행: 컨테이너 제조일(월 및 년)
3. 3행: 제조자 일련번호, 단 안전승인판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타 규정에 따른 승인판과 통합된 형식이라면 제조자 일련번호는 통합된 안전승인판의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ISO 6346에 따른 소유자 일련번호를 통합된 안전승인판의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다.
4. 4행: 컨테이너 최대총질량
5. 5행: 허용되는 겹침적재하중
6. 6행: 가로방향 래킹시험하중(가로방향 비대칭 외력시험)
7. 7행 및 8행: 끝벽 및 옆벽이 각각 0.4Pg 및 0.6Pg보다 크거나 작은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컨테이너에서는 안전승인판 하부의 공백에 끝벽 및 옆벽 강도를 표시한다(예: END-WALL STRENGTH 0.5P, SIDE-WALL STRENGTH 0.5P).
8. 9행: 안전승인판에 보수점검일을 기입할 목적으로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조 컨테이너의 최초 보수점검일(월 및 년) 또는 다음 보수점검일(월 및 년) 기입한다.
9. 한쪽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는 한쪽 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겹침적재 및 가로방향 래킹시험 하중을 표시한다.
(예: ALLOWABLE STACKING LOAD ONE DOOR OFF FOR 1.8g.....kg.....lbs
TRANSVERSE RACKING TEST FORCE ONE DOOR OFF.....newtons)
10. 안전승인판은 영구성, 내식성 및 내화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컨테이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11. CSC SAFETY APPROVAL 문자의 크기는 8mm 이상, 다른 문자 및 숫자의 크기 5mm 이상으로 하고 판 위에 각인 또는 부각시키든가, 다른 영구적이면서 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한다.
12. 검사증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의 합격 여부를 나타내는 확인표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국문			전화	
		영문			팩스	
	대 표 자	국문			홈페이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국문				
		영문				
사업장 주소 지방사무소 또는 분소 (해당하는 경우)						
책임점검자		국문				
		영문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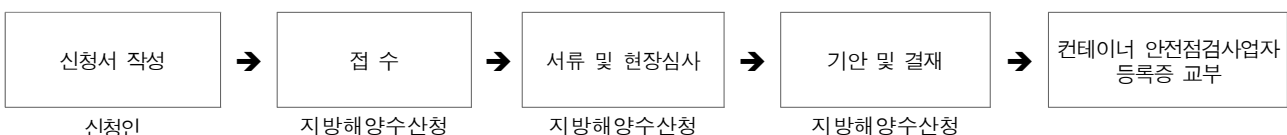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장

첨부서류	1.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가.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사업계획서 다. 별표 제29의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라.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컨테이너 점검 설명서 2.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한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수수료 •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록번호 제(지방청명)-(연도)-(발행번호) 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지방사무소 (분소)의 주소:

등록 연월일:

책임점검자(성명):

생년월일: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컨테이너

정기[]
계속[]

점검방법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컨테이너	종류					
	규격					
비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 계속[] 점검방법의 승인[]
변경승인[] 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사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컨테이너의 종류별·규격별 보유현황 나. 정기(계속)점검계획(조직 및 실시요령을 포함합니다) 다. 정기(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 및 판정기준을 포함합니다) 라. 정기(계속)점검기록, 정기(계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강도 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 방법 마.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3.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없음

유의사항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

납부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역	위반일자
	위반행위
납부내역	발행번호
	납부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선박안전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테이너 안전 조치 비용납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2(선박용물건 등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u> <u>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u> <u>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u>3.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u> <u>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u> <u>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u>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4. 형식승인증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2조의5(선박용물건 등의 성능

<신 설>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결함이 식별된 경우

3. 그 밖에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발생 등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종류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18조제1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품목별 판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
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
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및 제조단위번호(이하 ‘롯드번
호’라고 한다)가 동일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롯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동시에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
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회수·교환(결함이 발생한 부품
으로 한정할 수 있다)·폐기하
도록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게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
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6조에서 정한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또는 회수·교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해당 로트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 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선박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 정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선박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사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 정지) ① 법 제19조제4항-----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고시해야 ---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① 법 제23조 제10항-----

제출해야 ----.

[illegible]

제56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 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
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의 정관 사본
4.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
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
는 외국법인인 경우 해당국가
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
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신청
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
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u>확인한 서류</u> <u>5. 형식승인증서 사본</u> <u>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이거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 <u>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u> <u>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u> <u>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u>
제57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u>법 제23조제7항에</u>	제57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u>법 제23조제10항-</u>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
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
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
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신 설>

----- 제출해야 -----
----- . 이 경우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별도의 형식승인시
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발급해야 -----
----- . -----
제1항 후단에 따른 별도의 형식
승인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
----- 발
급해야 -----.

제57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10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년 이내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대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2년 이내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현장

<신 설>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의3(컨테이너의 성능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결함이 식별된 경우

3. 그 밖에 컨테이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발생 등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종류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컨테이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기준의 품목별 판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컨테이너 및 롯데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롯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는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판매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컨테이너를 회수·교환(결함이 발생한 부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폐기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0조에서

정한 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중지 또는 회수·교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해당 로트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 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컨테이너의 중대한 결함 사실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별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

3. 제조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2항 및 같
은 조 제3항-----

----- 제출해야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23조 제7항-----

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제60조(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②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1조(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 발급해야 -----
--.

③ 법 제23조제8항-----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
-----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
-----.

제60조(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3조의3제4항-----
--- 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취소 -----

----- 고시해야 -----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제61조(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인의 정관

3. 임원의 성명

4. 5. (생략)

③ (생략)

제63조(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것

2. 삭제

3.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10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 시험기관-----

----- 제출해야 -----
--.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요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삭제>

<삭제>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기준)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은 별표 29의2와 같다.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이 있을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선·항해·기계·기관·용접·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이하 이 조에서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컨테이너의 제조, 검사, 시험 또는 수리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관련업무”라 한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나. 대학의 관련학과 외의 이

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
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
한 자

라. 공업계고등학교의 관련학
과를 졸업한 후 관련업무
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자로서 관련업무에 2년 이
상 종사한 자

<신 설>

②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
록하려는 경우 또는 등록한 사
항을 변경(별지 제65의3호 기재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
전점검사업자의 등록(변경)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법
인인 경우 「민법」 제36조에 따
른 법인의 주소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

<신 설>

한다. 이하같다)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컨테이너 점검 설명서

가.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나. 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

다.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라. 책임점검자의 임명

5.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한 후, 그 기준

<신 설>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점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방법

에 맞으면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3조의2(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취소 및 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의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 법 제24조제4항

-----.

1. 2. (현행과 같음)

② -----

또는 계속점검방법을 위한 법 제24조제3항의 안전점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정기(계속) 점검방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 라. (생략)

<신설>

3. (생략)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

----- 법
제24조제2항-----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① 법 제24조제4항-----

----- 자 또는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

----- 제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3. (현행과 같음)

- ② -----

식의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지도·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대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신 설〉

발급해야

제66조(지도·감독) ① -----

----- 법 제24조제4항 -----

----- 대해 -----
----- 지도·감독을 해야 -----
----- . 이 경우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후 10
년이 도래(到來)하는 자에 대해
서는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이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
에 적합한지를 재검토하고, 필
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방문하여 안전점검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확인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

방법과 기준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법 제25
조제7항-----

----- 법 제25조제4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③ _____

----- 법 제25
조제6항-----

1. ~ 3.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25

조제5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 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

조제6항-----

---.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
법 제25조제7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

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
연장증인서, 제36조제2항에 따
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
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
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
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
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멍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
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
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
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
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
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
식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
인서,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
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
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

----- 컨테이너안
전승인판, 제63조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증-----

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 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	--